

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

「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하동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3. 5.

하동군의회의회장 강 대 선

1. **조례명:**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**제안이유**
 -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근거가 있으나 실제 하동군의회의 내에 해당되는 지급 대상자가 없어 ‘상시출장 공무원 여비’지급 조항 삭제(안 제2조)
- 나.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 정비 : 중복 조항 삭제
(안 제5조제3항)
- 다. 상위법령 준용 조항 등 불일치 사항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6조)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2일(목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동군의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유무와 사유, 수정의견)
- 2)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 방법

- 1) 팩스: 055-880-2939
- 2) 하동군의회의 홈페이지(<http://www.hdcl.go.kr>) 열린마당(의회에 바란다)
- 3) e-mail: uu1028@korea.kr

붙임 1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2. 하동군의회의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: 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(조항)	찬 성 여 부		의 건	비고
	찬성	반대		

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동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“소속장관””을 ““소속장관”과 영 제28조 중 “소속기관의 장”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공용차량”을 “공무용차량”으로, “별표 1”은”을 “별표”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“별표 1”을 “영 별표 1”로, “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,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, 「공무원임용령」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을 “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, 「공무원 임용령」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)</p> <p>① 상시출장을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(이하 “월액여비”라 한다)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,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.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,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동군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따로 정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<p>제5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당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</p>	<p>제5조(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삭 제></u></p>

며,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.

제6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,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.

1. (생략)
2. 영 제17조·제22조·제26조 및 제29조 중 “소속장관”은 각각 “의장”으로 본다.

3. (생략)

4.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“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”은 “하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동 규칙 별표 1”로 본다.

5. ~ 7. (생략)

8.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「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」으로,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으로,

제6조(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) 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- “소속장관”과 영 제28조 중 “소속기관의 장”-----
-----.

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공무원차량 -----
별표”는-----
-----.

5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영 별표 1 -----
-- 「공무원보수규정」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으로, 「공무원임용령」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-----

「공무원임용령」은 「지방공
무원 임용령」으로, “일반임기
제공무원“은 “개방형직위에
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“, “전
문임기제 공무원“은 “개방형
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
임기제 공무원“으로 한다.

